

인간 생명의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조명*

A Christian Worldview Illumination of Self- Determination of Human Life

김기흥 (Ki-Heung Kim)**

ABSTRACT

The Zeitgeist of self-determination, which started from the international move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s recently emphasize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even in bioethical topic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 correct view of humanity by illuminating the spirit of the era of self-determination that is universally spreading in the subject of bioethics today from a Christian point of view. After all, the starting point of a long debate about self-determination surrounding human bioethics is the difference in worldview. Modernism, an anthropocentric worldview, sees artificial death as a personal right and liberation for those who live a so-called 'meaningless life'. On the other hand, the Christian worldview starts from the belief that God is the essence of the universe based on the basic structure of creation, fall, and redemption, and sees that all life is precious and that God is the master of life.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hospice system needs to be socially revitalized to have spiritual hope based on the Christian worldview, to minimize psychological anxiety or physical pain about death, to protect life until the last minute, and to finish life as dignifiedly as possible.

Key words : Christian worldview, bioethics, euthanasia, abortion, self-determination

* 2021년 5월 11일 접수, 6월 13일 최종수정, 6월 15일 게재확정

** 부산교육대학교(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유아교육과 교수, 부산 연제구 교대로 24, koelnkim@bnue.ac.kr

I. 서론

수 시간 동안 에른스트 로사(E. Lossa)는 죽음과 사투를 벌였다. 1944년 8월 8일 늦은 저녁에 간호사는 이 아이에게 수면제 성분의 루미날(Luminal)을 다량 주사했다. 왜냐면, 그는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었다. 사망증명서에 의하면 로사는 다음날 오후에 숨졌다. 그 당시 그는 겨우 14살이었다. 그는 카우프보이렌(Kaufbeuren) 치료요양소와 이어제(Irsee) 보조시설에서 나치의 안락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살해당한 약 2,400 여명의 환자 중 한 명이었다.(이하 생략)(<https://www.spiegel.de>).

히틀러는 특히 인종주의와 사회적 다윈주의 정치 이념을 중심으로 유대인 외에도 수 십 만 명의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들에 대하여 국가주도의 강제적 불임시술과 안락사를 자행하였다. 당시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들은 나치정권에 의하여 학습 능력이나 치료가능성 혹은 노동이 불가하다고 분류되어 ‘살 가치가 없는 목숨’으로 간주되었던 것이었다(김기홍, 2018: 91).

자기결정의 개념은 학문적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사회복지학적 측면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요구를 인식하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통하여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인간의 자기결정 본성과 관련하여 17세기 독일 자연 철학자 푸펜도르프(Pufendorf)는 ‘인간은 최고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그는 이성의 빛, 사물을 판단하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과 예술에 능숙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그의 인간 존엄사상은 인간의 영혼, 이성과 결정의 자유사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프랑스 교육학자 루소(Rousseau)는 교육의 목표를 아동으로 하여금 이성적이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교육을 통하여 형성된 자율적이고 자기결정적인 사람의 특징은 모든 일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독일의 칸트(Kant)도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하여 인간 이성과 도덕적 자율성을 강조했는데, 보편적 윤리는 인간의 자율성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자율성은 도덕성의 유일한 원칙임을 주장했다(Aberger, 2011; 32-37).

이처럼 자기결정은 일상적인 생활 중에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기본 가치와 존재 의미를 가리킨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방식을 타인에 의존하기 보다는 최대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헌법 제10조에 인간 존엄,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조항에서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두고 있다. 독일은 기본법(GG) 제1조에 ‘인간의 존엄성은 저촉될 수 없다. 이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라며 인간 존엄성과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 ①항에는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관습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계발할 권리를 가진다’라며 일정범주 내에서 개인의 자유로

은 인격발전을 위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자기결정은 독일의 사회보장법 제9권(SGB IX)의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는 장애인이나 장애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개인적 재활과 사회적 참여과정에서 자기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정하고 있다. 자기 결정은 ‘독(자)립’과 동일시하는데, 예로, 지체 장애인은 운동과 이동 시 타인의 지원과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가 음식, 이동, 거주 등 자신의 일상생활의 세부 사항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이는 곧 자기 결정적인 삶이라고 본다. 또한 지적장애인들도 적절한 사회적 지원과 촉진과정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의 역사에서 장애인들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돌봄이 가장 필요한 대상이었는데, 이때 실제적으로는 외부통제(타인결정)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왜냐면, 그것은 비장애인인 전문가들이 장애인들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은지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식의 사회적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독일은 1994년 기본법(GG) 제3조 제3항 ‘아무도 자신의 장애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어 장애인의 법적 평등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 같은 기본법의 일반적 원칙은 2001년 7월에 발효된 사회보장법 제9권을 통해 법적 차원에서 장애인관의 획기적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즉 장애인은 단지 타인의 돌봄에만 의존하는 대상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사회적 참여에서 동등한 주체적 시민이라는 점이였다.

한편 국제사회도 자기 결정과 관련하여 2006년에 신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등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보장을 위해, 특히 ‘자율’, ‘자유’ 혹은 ‘자립’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유엔총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채택되었다. 제3조(일반원칙)나 제9조(무장벽), 제19조(독립생활(자기 결정적 삶)의 영위와 지역 공동체로의 포용), 제20조(개인적 이동), 제25조(재활) 등에서 장애인들의 자기 주도적인 삶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항이다.

독일의 자기결정 운동은 1980년대부터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에 의해 시작됐는데, 그 역할 모델은 미국의 흑인과 여성의 시민권 운동을 기초로 1970년대부터 활동해 온 자립생활 운동이었다. 자립 생활이란 일상생활에서 당사자가 타인의 심리적, 신체적 결정으로부터 의존성을 최소화하고, 수용 가능한 대안 중에서 선택하여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권리를 말한다. 독일의 자기결정 생활 운동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인권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했다. 이에 독일은 미국의 ‘자립 생활 센터(Center of Independent Living: CIL)’ 모델을 기반으로 1986년에 브레멘에 최초로 자결생활 센터(Die Zentren fuer Selbstbestimmtes Leben: ZSL)가 설립되었다. 이처럼 자기결정은 역사적으로 주로 장애인들의 삶의 영역에서 선택과 결정과정이 타인중심으로부터 점점 당사자의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자유와 권리가 강조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장애인들의 삶을 중심으로 일어난 자기결정 운동이 최근에는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활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가고 있는 시대정신(Zeitgeist)임을 알 수 있다. 그

한 예로, 2018년 5월 10일 스위스에서 안락사(조력자살)를 통하여 스스로 생을 마친 호주의 생물학자 데이비드 구달(Goodall, 104세)박사이다. 그는 학자로서 은퇴 후에도 오랫동안 무보수로 일을 했고, 사무실까지 버스를 타고 출근하거나 테니스를 칠 정도로 의지가 대단해 주변에 많은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이후 미국의 ABC방송의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소원은 죽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죽음을 무섭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본다’라고 하며 자신의 힘든 삶의 질을 한탄했다. 그는 죽음 직전까지도 정신이 또렷했고, 삶에 대한 의지는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죽음 이후 유골이 뿌려지기를 원했고, 장례식 등 어떤 의식도 원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사후의 또 다른 삶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https://www.welt.de>; <https://www.ksta.de>).

이처럼 자기결정 운동은 주로 장애인의 삶을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최근에는 안락사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인공임신중절(낙태)이나 심지어 자살 등에 이르기까지 생명 윤리와 관련된 주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인식이나 법 제정에 있어서 열띤 논쟁과 갈등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장애인의 자기결정의 역사적 흐름을 개관하고, 이어서 최근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생명 윤리에서의 자기결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 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오늘날 생명윤리의 주제에 보편적으로 확산된 자기결정의 시대정신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조망함으로써 올바른 인간관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와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자기결정의 역사적 흐름 개관

오늘날 자기결정은 시대적 유행어 이상의 의미가 있고, 이는 세계적인 운동으로까지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인생 태도나 인간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자기결정운동의 기원은 미국이며, 이는 영어의 ‘Independent living’에서 유래하여 ‘독립(자)적인 생활’, ‘자기결정적인 삶’ 등으로 이해한다. 이는 원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기 결정, 자기 존중, 기회 균등을 강조하며, 더 이상 일방적인 후원, 돌봄, 차별이나 보호 시설에 맡겨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때부터 세계적으로 장애인들은 시혜적인 복지정책이나 후원자를 통한 의존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났고, 장애가 결코 자기 결정적 혹은 독립적인 생활에 방해물이 아님을 보여주하고자 했다.

미국의 1960년대는 흑인과 여성들의 인권이나 반전운동 등 사회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였는데,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운동과 자기결정적인 삶의 운동은 중증장애인이자, 장애인 운동의 아버지로 불리었던 로버츠(Roberts)로부터 시작했다. 그는 사지 마비와 폐 근육마비로 철제로 제작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며 살아야 했다. 로버츠는 자신의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체육수업이나 운전면허 교육 등 필요 요건

을 이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교당국으로부터 졸업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캘리포니아 대학 진학 시에도 교육당국이 자신의 중증장애를 이유로 입학 거부를 당하자 대학의 부당한 조치를 언론과 지역사회에 알렸고, 적극적인 투쟁으로 1962년 캘리포니아 버클리 캠퍼스 정치학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대학 건물, 강의실, 식당이나 도서관의 접근은 계단 때문에 보조자나 동료의 도움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로버츠는 800파운드의 무거운 철로 제작된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거주지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교내 코웰(Cowell)병원의 보건 서비스 센터로부터 빈 공간이 제공되어 기숙하면서 학교생활을 시작했다. 이것은 다른 중증장애 대학생들에게 좋은 전례가 되었다. 그 당시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재한 환경을 개선코자 1968년에 로버츠와 그의 동료 등 12명에 의하여 ‘롤링 쿼드(Rolling Quads)’라는 조직이 결성됐다(Mürner/Sierk, 2009: 55-57).

롤링 쿼드는 1970년에 연방정부와 버클리 대학 측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지체장애대학생 프로그램(Physically Disabled Students' Program: PDSP)을 운영했다. 그 주요 내용은 장애인 대학생의 주거 문제, 활동보조인, 의료보호나 복지 관련 상담, 휠체어 수리나 특수 차량을 통한 접근성 확보와 시각장애인들의 대독서비스 등으로 장애인들의 최대한 독립적인 학교생활과 사회 공동체에서 함께 사는 것이었다. 로버츠에 의하면, ‘독(자)립’의 정의를 신체적,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규정하면 이미 장애인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다. 자립은 스스로 자신의 생활양식을 결정하는 것이며,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에도 이를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라면, 이 또한 독립적인 삶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지체장애 대학생 프로그램을 모델로 장애인 단체, 지역 내의 장애인, 졸업생, 캘리포니아 대학의 재학생들은 1972년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을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 자치 조직인 자립생활센터(CIL)를 최초로 설립했다. 이 센터는 모델역할을 하며 장애인 간 상호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직됐는데, 유사한 상황에 처한 동료 간 지원(Peer Support) 사례는 장애인 자신의 상황 분석과 삶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전략을 계발하는데 유능한 일반전문가의 개입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장애인 자신이 스스로의 관심사에 최고의 전문가이므로, 이들이 타 장애인에게 상담지원을 하는 것이다. 사실 동료지원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닌데, 이미 알코올 중독자, 전쟁 참전자, 도박중독자, 게이 등 동일한 문제를 가진 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었다.

1979년에는 자립생활센터의 여러 프로그램 활동이 미 정부로부터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대안으로 인정받아 국가 재정을 지원받았다. 특히 장애인들로부터 시작된 자기결정운동의 주요 성과는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504조와 1990년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이 통과되어 시민권을 비롯하여 교통, 고용, 음식점 등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상의 처벌도 가능하게 됐다.

또 자(독)립 생활이나 자기결정적인 삶은 더 나은 해결책을 개발하고 대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정치적으로 조직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자기결정 운동에서 장애인들도 민주 사회의 동등한 시민이자 건강, 재활과 사회적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일상적인 삶의 계획에서 자유와 자기결정의 권리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했다. 이에 자기결정 운동가들은 사회적 구조, 제도, 인식의 장벽 제거와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제품이나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설계되는 디자인 분야인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UD) 원칙의 도입을 촉구하였다. 수 십 년 동안 지속된 자기결정 운동은 북미로부터 모든 대륙으로 확산되어 오늘날 많은 국가들의 사회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 출신의 사회학자이며 스웨덴의 장애인 운동가인 라츠카(Ratzka)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Miles-Paul, 1992: 40-46).

자기결정의 삶은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하고 싶거나, 아무도 필요하지 않거나, 고립된 생활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 하지 않는다. 자기결정적인 삶은 오히려 우리의 비장애 형제자매나 이웃, 친구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생활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통제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성장하고, 이웃 학교에 가고, 이웃과 같은 버스를 타고, 우리의 교육이나 관심에 부합하는 직업에서 일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소속감을 느끼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동일한 욕구를 가진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다 (<https://www.bizeps.or.at>).

III. 생명 윤리에서의 자기결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

이처럼 장애인 운동에서 시작된 자기결정적인 삶이 현대에는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에서도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자 권리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자기 결정적 삶의 태도는 최근에는 생명윤리의 주제 영역까지 그 영향력을 강력히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생명과 자기결정 관련 역사적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고대사회는 질병, 부상, 노년의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 유거나 소극적 안락사 형태로 죽음을 도와주기도 했다. 그리스는 질병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자살 행위를 벌하지 않았고, 로마도 처형을 대신해서 당사자에게 자살의 기회를 주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중세이후에 기독교의 유입과 함께 생명은 창조주의 권한으로 간주하여 자살 등이 엄금됐다. 그러나 근대 인간성 회복 운동인 르네상스 시대에 생명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엄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변화도 보였다. 예를 들어, 15세기 영국의 모루스(Morus), 16세기 프랑스의 몽테뉴(Montaigne)와 영국의 베이컨(Bacon)이나 17세기 영국의 돈(Donne) 등 일부 기독교 사상가들은 불치병환자의 자살과 안락사가 자연법, 이성 및 신법을 어기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그 필요성과 정당성

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18세기에 프랑스의 볼테르(Voltaire)나 루소(Rousseau), 스코틀랜드의 흄(Hume) 등에 의하여 자살이 윤리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기 시작했다. 19세기에는 독일의 쇼펜하우어(Schopenhauer)를 중심으로 불치병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인위적 조치에 찬성하는 쪽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모아졌다. 한편 20세기에는 학계나 법조계에서도 자살뿐 아니라 환자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안락사의 정당성과 법적 기준을 모색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일어났다. 결국 인종주의와 사회적 다윈주의의 이념으로 독일 나치정권은 ‘살 가치가 없는 목숨’으로 본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게 강제적 안락사조차도 정당성을 주장하며 대학살을 자행하였던 것이었다(허일태, 1994: 50-54).

이어서 최근까지 안락사를 비롯하여 연명의료결정, 낙태 및 자살 등 특히 생명 윤리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논란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안락사(Euthanasia)

(전략)스위스는 1942년부터 안락사가 용인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말기 암이나 전신 마비의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안락사가 허용되었으나 지금은 우울증을 앓아 삶의 욕구를 잃은 사람까지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의료 기록과 온전한 정신으로 스스로 결정한 것인가 여부다. 스위스가 안락사를 용인한 것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정서도 있지만 높은 자살률도 한 가지 이유로 꼽는다(중략). 2019년 서울신문사와 여론조사기관이 우리나라 성인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국민 80%가 안락사에 찬성했다.(이하생략)(<https://news.joins.com>).

몸이 거의 마비된 페루의 40대 환자가 법원으로부터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를 인정받았다(중략). 최근 현지 매체 페루21과의 인터뷰에서는 “몸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매일 더 힘이 없어진다”며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 이후 에스트라다라는 페루 RPP뉴스에 “매우 기쁘다. 자유를 위한 싸움이었다. 죽고 싶거나 죽음의 변명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기 위한 것 이었다”고 말했다.(후략)(<https://www.yna.co.kr>).

안락사(Euthanasia)라는 용어는 ‘아름다운 죽음’ 혹은 ‘좋은 죽음’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인 엡실론타나시아(εὐθανασία)에서 유래하였다. 이는 오늘날 불치의 중병 등으로 치료나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동물에게 직·간접적 방법으로 인위적 생명 단축을 통해 사망케 하는 의료행위를 일컫는다.

안락사는 수단과 동의여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뉘는데, 수단으로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한다. 전자는 불치병이나 극심한 고통을 가지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들의 삶을 단축시키기 위해 타인이 치사량의 약물이나 독극물을 직접적으로 주사하는 등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하는 안락사이다. 이는 환자의 명시적인 청탁이나 촉탁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적, 의학적, 종교적인 면에서 허용되지 않는 범죄나 비윤리적인 행위로 여긴다. 이어서 후자는 환자의 치료나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통증완화 의료행위, 영양분, 물, 산소공급 등의 생명유지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동의 여부에 있어서 자발적과 비자발적 안락사가 있는데, 전자는 환자가 동의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 직접적이고 자유로운 승낙이나 촉탁을 통해 치명적인 약물주사를 투입하여 환자의 생명을 끊는 것이다. 반면에 후자는 당사자의 생사 선택이 불가능하여 자율적인 동의가 없음에도 가족이나 국가의 요구에 의해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이다. 그 밖에 반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의지나 결정에 반하여 생명을 중단시키는 행위, 즉 살인에 해당하며, 의사조력 죽음(조력자살)은 타인의 도움을 받지만 결국 스스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해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의료진이 이를 직접 시행하는 적극적 안락사와는 구분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유일한 존엄사는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물, 산소 등을 중단치 않고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를 중단하는 것을 가리킨다.

안락사 문제는 사실 의학적 입장, 인권 문제, 삶의 질과 의미, 생명의 존엄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진다. 먼저 안락사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환자의 극심한 고통이나 심적 스트레스, 치료 불가능, 무의미한 치욕적인 삶이나 경제적 부담 등을 찬성할만한 요소로 든다. 이때 안락사는 결정의 합리성이나 자신의 생사를 결정할 자율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안락사 반대 입장은 대부분 기독교 등 종교계에서 고수하는 것이다. 특히 인간의 생명은 기본적으로 창조자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기에, 이를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락사가 사회적으로 쉽게 허용될 경우에 이를 남용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만약 소생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환자의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안락사를 시행한다면, 이는 이른바 '무용한' 인간을 죽이는 것을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인식될 위험이 클 수 있다. 그 밖에도 자발적 결정이란 보통 정상적인 신체와 정신 상태에서 가능한데, 고통 중의 환자가 안락사에 대해 스스로 하는 결정이 과연 옳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된다. 안락사는 인생에서 고통의 의미를 지나치게 무시하는 경향성을 비판하기도 한다. 인생여정에서 고통 없는 삶은 불가능하며, 고통에는 독특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결국 안락사는 존엄한 인간생명에 대한 극단적인 도전으로서 윤리적 관점뿐 아니라 법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금교영, 2000: 189-197; 문성학, 2000: 238-239).

2. 연명의료결정(Life-Sustaining-Treatment Decision-Making)

“죽음을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게 나에게도, 자식에게도 좋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60대, 홍모씨). 국내 연명의료결정 제도(존엄사) 시행 3년. 죽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중략).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준 것을 말한다.(중략). 김모씨(71)도 “...자식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고, 무엇보다 죽음의 시기만 연장하는 불필요한 치료보다는 말 그대로 존엄하게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더라고요.”라고 말했다.(하략)(<http://www.newspost.kr>).

(전략).유의미하게 볼 부분은 환자 본인이 의식을 갖고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건수가 늘었다는 것이다. 그간 환자가 아닌 가족의 의지로 연명의료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존엄사 문화’ 정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중략).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의 가족이 대신해 의향을 전하는 ‘환자가족진술서’도 2018년 8737건에서 2020년 1만8805건으로 늘었다. 이는 환자 본인이 의사를 표현한 구체적인 서류가 있거나, 환자의 의사를 추정한 것이므로 자기결정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사례로 분류된다.(이하 생략)(<http://news.kmib.co.kr>).

우리나라는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제도)’이 본격 시행된 뒤 존엄사 선택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수혈,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를 당사자가 시행을 원치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개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다.

최근 남편이 중환자실 아내를 인공호흡기 제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한 사건이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남편 측은 아내의 소생가능성이 없었던 점과 아내가 생전에 연명치료거부를 밝힌 점, 하루에 20만~3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등으로 범행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연명치료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한 점,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을 들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맞섰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전원은 유죄라 판단하여 1심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https://www.yna.c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의 연구보고서인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에서 일반 국민에게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7%가 연명치료를 반대했고, 74.5%는 이를 포함해 죽음 등 모든 결정도 자신이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도 당사자의 자율적이고 직접적인 명

확한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특히 중요한 전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가족의 의사에 대한 인정범위를 둘러싼 사회적인 합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등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된 핵심요소는 캐나다 존엄사 협회의 슬로건처럼 ‘당신의 삶이며, 당신의 선택이다(It’s your life. It’s your choice)’로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박상은, 2018: 72-73, 정화성, 2017: 209).

3. 자살(suicide)

생명존중시민회에서는 국내외 통계자료를 분석해 2021년 자살대책 팩트시트(factsheet)를 발표했다. (중략). 2019년 자살자 수는 2017년 대비 10.7%나 증가했고,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적으로 통계 비교가 가능한 2016년 기준으로 183개국 중에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는 26.9명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중략).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자 수는 2019년 3564명으로 지난 2018년 3390명과 2017년 3111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경찰청 2019년 통계연보).(이하생략).(http://www.newspim.com).

김정환(1995, 30-36)은 인간이 타 동물들과 구별되는 12가지의 존재양식의 특징으로 직립보행, 수치심, 사색, 언어, 문화, 과거반성, 예술, 미래지향, 부정적 긍정, 규범, 죽음의 인식을 비롯하여 자살이라는 독특한 행위를 하는 존재라고 한다.

19세기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민족학자인 뒤르켐(Durkheim)은 자살 연구에서 구·신교의 종교별, 성별, 기혼과 미혼, 군인과 민간인, 전쟁 시와 평시, 교육수준이나 자녀 유무, 국가의 날씨, 계절이나 경제상황 등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매개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이때 자살률은 여성보다 남성, 기혼자보다 독신자, 자녀가 있는 부부보다 없는 부부, 가톨릭이나 유대인보다 개신교인, 민간인보다 군인, 전쟁보다 평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한다고 보았다. 그는 1897년의 저서인 ‘자살론’에서 자살을 사회학적 현상으로 보고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규제 수준 간의 불균형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먼저 ‘이기적 자살’은 사회적 통합 정도가 매우 낮고 개인과 사회의 결속이 약할 때 발생하고, 이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회에서 일상생활 부적응이나 고독감으로 행하는 자살이다. 이어서 ‘이타적 자살’은 집단주의적 사회처럼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가치에 종속되는 사회적 통합정도가 지나치게 강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사회적 명분이나 목적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아노미적 자살’은 사회적 규제가 약할 경우인데, 안정되어 있던 가치관이나 사회 규범이 급격히 와해되는 상황에서 볼 수 있다. ‘숙명적 자살’은 교도소 재소자나 노예의 자살처럼 개인이 사회에 의해 욕망이 과도하게 규제될 때 일어난다(Delitz, 2013). 우리나라의 자살 유형은 대체적으로 경제적 곤란으로 우울증이나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가 가족이나 친척의 전통적인 공동체 결속을 약화시킨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살에 대한 논쟁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자기희생의 자살행위는 보통 도덕적 비난이나 논쟁에서 제외시킨다. 여기에서 논의의 주된 내용은 불치의 질병이나 극도로 고통스런 주변 상황으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믿어 자살을 행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자살과 관련하여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이들은 자살행위를 선택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여기므로 그것이 도덕적으로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 반면에 자살은 타인이나 국가 혹은 신에 대한 관계성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자살은 주변 가족과 친구 등 인간관계나 국가적인 측면에서 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해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역할을 이행해야 하는 책무를 못하게 하는 방식의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다. 유족들 중 절반이상은 종종 우울장애를 보이고, 자살자 유족의 45%는 자살을 시도하거나 실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소유자이므로 인간 스스로 자신의 생명에 대한 선택과 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본다(Brody, 2000: 216-218; <https://news.v.daum.net>).

4. 인공임신중절(Abortion)

(전략). 인권위는 31일 국회에 제출된 형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낙태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하므로 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시 낙태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 표명했다고 밝혔다.(중략) 이에 따라,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되 ‘임신15~24주’엔 예외적 허용사유를 두는 개정안을 지난 10월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명시된 △성폭행·근친 상간에 의한 임신 △임부의 건강 위험 외 ‘임신 지속이 사회적이나 경제적 이유로 임신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낙태가 가능한 사례로 새롭게 추가했다.(이하생략).(<https://www.nocutnews.co.kr/>).

우리나라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제7항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동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의 임신,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허용하고 있다.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낙태 건수가 약 5만 건이며, 사실 음성적인 사례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http://www.>

justice 21.org).

낙태 합법화 관련 주요 쟁점에서 낙태죄 폐지자 측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선택권을 갖길 원한다’라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등 임신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태아에게는 도덕적인 아무런 의미나 중요성 등 도덕적 지위나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낙태죄 처벌은 미국이나 독일 등의 실태조사 보고서(<https://www.nocutnews.co.kr>)에서도 낙태감소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보며, 낙태를 선택할 경우에는 오히려 불법 수술을 감수해야 하고, 또 이는 산모의 안전성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공임신중절 논쟁의 핵심은 인간의 정의와 태아의 도덕적 지위이다. 따라서 보수적 입장에서 태아는 임신 순간부터 잠재적이거나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성인인 인간과 동등한 생명권이 있으므로 생명을 앗는 것은 살인이며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산모의 사생활권보다는 태아의 생명권을 더 강조한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만일 온전한 인간으로 인정된 태아와 임신부의 생명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경우이다. 이때 법적으로나 사회적 인식은 보통 임신부의 생명을 구하려고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낙태를 불가피하게 허용하는 것인데, 이를 ‘이중효과의 원리(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라 한다. 만일 모든 인간의 생명이 동등하게 소중하다면, 산모의 생명을 위해 태아의 생명을 희생시킬 정당성 논란이 있다. 낙태 문제에서 보수적 입장은 이른바 ‘미끄러운 경사길 논쟁(slippery slope argument)’이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낙태를 쉽게 용인할 경우에 유아나 중증장애인과 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확대되어 인간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될 위험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문성학, 2000: 205-206, 215, 224).

낙태에 대한 찬반 대립은 결국 태아와 임신 여성 간의 생명권이나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우선권 논쟁을 의미한다. 현행 헌법 상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모든 기본권 보장의 최우선 이념이라 볼 때, 생명권이 자기결정권보다 우선이므로 낙태행위는 숙고해야 한다. 최근 형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안에서 추가된 낙태 가능 사례로 여전히 그 개념과 범위가 아직은 모호한 ‘사회적·경제적 이유’가 허용될 경우에 생명 존엄성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기도 하다(<http://news.kmib.co.kr>).

IV. 생명윤리의 시대정신과 기독교적 조명

1. 기독교 세계관적 입장에서의 인간(생명)관

기독교 세계관은 주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및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등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8세기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 슈라이어마허(Schleiermacher)에 따르면, 세계관

은 세계와 인간 등에 관한 다양한 지식이나 경험이 인간의 사고나 감정, 의지와 행동이 상호 관련된 총체적인 사고의 틀이다(Nowak, 2001). 성경의 창조-타락-구속이라는 체계는 기독교 세계관의 필수 요건을 도출하는 기초이며 세속적인 세계관들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평가·비판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인간, 인간생명 및 자기결정 간의 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기독교적 사고의 가장 기초인 창조-타락-구속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성경의 인간관은 간단명료한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물과 구별되게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이다. 창세기 1장 27~28절 ‘하나님이 자기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에서 인간은 타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따라 창조된 존엄한 존재이다(Stott, 1985: 184-187; Sire, 1994: 66-67). 인간의 존엄성은 창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등을 통해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로부터 출발하는데,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이성적, 영적, 도덕적, 사회적, 창조적, 사랑, 자유 등의 신적인 자질과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유일한 피조물이다(시 8:5~8).

동시에 인간은 범죄를 통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창 3장; 롬 5: 12)이다(Stott, 1985: 58-59).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본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며, 하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지성, 감성 및 의지를 통하여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자유의지에 따라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양승훈, 1999: 75; 이경직, 2016: 35-64). 그러나 사탄은 먼저 하와를 유혹했고, 이어 아담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지음으로서 인류의 전적 타락(total depravity)은 시작되었다. 첫 사람들은 본래 창조주와 의존적이고 순종적인 관계 속의 완전한 인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불순종과 교만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만물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상숭배와 이기주의 사상 등으로 변질시켰다(창 3: 5, 13, 17-18). 이는 인간의 지, 정, 의의 전인격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자기중심적, 무신론적인 사고가 선택과 결정의 중심을 차지하였다(양승훈, 1999: 69, 74-80; Marshall, 1986: 74-76).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통하여 자신의 본래 모습, 즉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할 구속(원)의 대상이다.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원죄’로 인하여 악하여 철저히 자기중심적 존재라고 평가한다(창 8: 21, 렘 17: 9, 시 51: 5, 롬 3:9-18).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대속을 통하여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가시적인 세계와 비가시적인 영적세계를 비롯하여 사회구조나 논리의 세계까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처음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의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길을 여신 것이다(사 11: 6-9, 65: 25; 막 10: 45; 갈 3: 13; 롬 3: 24). 이처럼 기독교 세계관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주권자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거듭 밝힌다(시 139: 13; 욥 10: 8).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출생 이전

부터 출생,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인격적인 연속성 속에서 생명의 출발점이자 주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Stott, 1985: 370-375; 시 22: 9-10, 시 139, 눅 1: 41-44 등).

2. 생명윤리에 대한 대표적 시대정신의 성경적 비판

탈근대주의(postmodernism) 사상은 인간이 자신의 삶과 운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자기결정의 원칙을 강조한다. 이러한 시대정신은 어떠한 외부의 권위나 규범에 의하여 자신의 삶에서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이 제한받거나 통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더군다나 기독교 세계관적인 사고나 행동이 진리라는 선포에 대해 이를 기독교의 착각이거나 한낱 인간에 대한 억압으로 본다(McGrath, 1996: 65, 206-209). 세속적인 사상들은 궁극적인 실재를 범신론(pantheism)을 비롯하여 무신론, 물질, 논리적 체계 혹은 사회나 경제구조 등의 각종 우상들로 여긴다(양승훈, 1999: 54-56, 82-83). 이와 같은 시대정신은 오늘날 안락사나 연명의료결정과 낙태, 자살 등에 이르기까지 생명여탈 결정권을 점점 개인의 자유의지에 맡기는 풍조가 만연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세속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나 존재가치의 평가에서 왜곡된 인간관 형성에 일조한 대표적 인물 중에는 먼저 19세기 말 오스트리아 심리학자요스트(Jost)를 들 수 있다. 그는 1895년 53쪽짜리인 '죽음에 대한 권리(Das Recht auf den Tod)'라는 저서를 통해 안락사(조력자살)에 대한 논란의 계기를 만들었다. 그의 아버지는 노년기에 자살했는데, 그의 아버지는 요스트에게 삶에 만족하지 않으면 자살하라고 권고하였다. 요스트는 '죽을 권리가 있는가?'라며, 개인의 죽음이 자신과 사회를 위해 옳은 경우가 있는지를 자문했다. 그는 불치의 정신적, 육체적 질병의 문제를 언급했고, 18세기 스코틀랜드 철학자며 역사학자였던 흄(Hume)의 공리주의 사상에 따라 기쁨이나 고통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순수한 자연스러운 관점에 따르면 인간 삶의 가치는 두 가지 요소로만 구성 될 수 있다. 첫번째 요소는 당사자의 삶의 가치, 즉 그가 경험해야하는 기쁨과 고통의 합이다. 두 번째 요소는 개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이익과 해악의 합계이다.(중략)인간의 삶의 가치는 단순히 제로가 될 수 없으며, 말기 질병의 경우처럼 고통이 클 때는 부정적이기도 하다. 어떤 의미에서 죽음 자체는 제로의 가치를 나타내므로 여전히 부정적인 삶의 가치보다 낫다.(Jost, 1895: 13, 26).

이로써 요스트는 불치병의 경우에 죽을 권리가 부여되기를 주장했고, 이 원칙은 무용(無用)하거나 매우 고통스런 삶이나 상당한 양의 물질적 가치를 소비해야 하는 불치의 정신질환자들에게도 유효하다

고 했다. 인간생명이나 인간존재의 가치와 관련된 그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안락사(조력자살)에 대한 논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인종주의와 사회적 다윈주의 사상으로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킨 히틀러 정권의 경우이다. 그는 19세기 인종학이나 인종우생학 이론으로 인류를 종에 따라 우열로 나누고 가치를 부여했다. 북유럽의 아리아인, 특히 게르만 민족은 가장 우월하고 세계를 지배하도록 선별된 인종으로 본 반면에 유대인이나 슬라브인들은 멸절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 다윈(Darwin)의 생물학적 결정론주의인 진화론에 따라 인간사회의 발전을 위해 장애 및 질병 등 열성유전 인자는 도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기홍, 2018: 73-79). 여기에는 1920년 형법학자 빈딩(Binding)과 의사 호헤(Hoche)의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의 멸절에 대한 허용'이라는 소책자를 통해 독일의 안락사 토론의 확산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이 저서에 서도 요스트의 사상이 언급됐고, 이는 후에 나치 정권의 대량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는데도 적극 인용되었다(Schmuhl, 1992; 68-70).

한편 20세기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핵심으로 한 호주의 공리주의자인 싱어(Singer)의 인간관도 매우 놀랍다. 1975년에 자신의 저서인 '동물해방'으로 수많은 채식주의자들이 생겼고, 현대 동물윤리의 창시자가 되었다. 그는 동물권 운동을 통해 인간의 동물실험, 동물사육, 도축이나 육류 음식 등에 대해 매우 비판적 입장에서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강조했다. 그는 이익평등 고려의 범주 안에 동물도 포함시키면서 인간과 동물의 고통과 쾌락을 동일선상에 두고 고통의 총량을 줄이는 방향을 지향하는 행위를 선이라 주장했다. 싱어는 동물해방운동에서 인간이 다른 동물에 대해 월등하다는 생각은 기독교주의적 사고방식인 종차별주의(speciesism)의 산물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략)인간의 문제를 궁극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나의 확고한 신념이다. 나의 입장을 지각 있는 모든 존재의 입장과 항상 환치해보는 것이 모든 종교적 명제에 우선한다. 대체적으로 종교는 공평성을 결여하고 있다.(중략).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유대교의 경우는 좁은 울타리의 동네사람이나 선민의식에 절어있는 유대인종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예수가 말하는 '이웃'도 기껏해야 인간이라는 종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성차별, 인종차별이 악이라면 물론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는 종차별주의(speciesism)도 악이다.(중앙일보 인터뷰, 2007. 5.21. <https://news.joins.com>).

그는 인간을 종으로서의 인간(member of the species homo sapiens)과 인격체로서의 인간(person)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인간은 생물학적 인간 존재로서 초기 태아, 후기 태아, 심한 정신장애아, 신생아 등 자의식이나 미래감, 타인과의 관계 맺을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또 후자는 삶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합리적이고 자율적이며 자의식적인 존재라 한다. 그는 더 나아가서 호모사

피엔스 차원의 인간과 관련하여 생물학적으로는 살았지만 인격적으로는 죽은 경우로 기쁨보다는 고통을 더 많이 경험한다면 차라리 고통 없이 죽도록 안락사나 낙태를 허용해도 도덕적으로 그릇된 일이 아니라고 강조 한다(Singer, 1997: 114-120; <https://www.welt.de>).

소생 가능성 없는 뇌사의 인간이나, 심각하게 불구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주변 식구나 양식을 가진 의사 어려운 논의 끝에 도달한 합의(선호)를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자비로울 때가 있다(중략). 저등 의식의 유아보다 더 고등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동물도 많다. 이런 동물은 마음대로 죽이면서 안락사 문제에만 인도주의라는 존엄성의 잣대를 운운하는 것은 위선이다.(이하 생략).(중앙일보 인터뷰, 2007. 5.21. <https://news.joins.com>).

이처럼 요스트나 히틀러 및 싱어 등의 세속적인 입장에서의 인간관은 인간의 다면성이나 통합적 특성을 찾기가 어렵다. 여기에는 주로 유물론적 인간관이나 진화론적 인간관이 주를 이룬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신은 존재하지 않고 궁극적인 실재는 물질이며, 인간도 한낱 물질로 구성된 존재로만 이해한다. 후자의 경우는 유물론적 인간관에 기초를 두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 동물들과 유전적으로나 해부학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존재이며, 단지 정량적으로만 우수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인간의 존재 의미나 목적 및 방법 등을 이해하고 있다(양승훈, 1999: 114-118; 이종원, 2009: 185).

V. 결론 및 제언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회적 인식 면으로나 법적인 측면에서도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자기결정이라는 시대정신을 더욱 더 강조하며 이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안락사를 비롯하여 연명의료결정, 낙태 및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생명윤리와 관련된 주제에서도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최초의 자기 결정운동은 장애인들의 개인적 재활과 사회적 통합 과정에서 오랫동안 전문가나 보호자 등 주로 타인들에 의한 수동적인 삶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부터 당사자의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권을 강조한 것에서부터 출발한 국제적 장애인 운동이었다. 이러한 인식이 최근에는 자신의 생명 결정까지도 이른바 ‘당사자’ 중심의 자기결정권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물론 장애인의 경우처럼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이나 심지어 생존(명)권조차 타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일은 일차적으로 매우 심각한 개인적이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비록 자신의 생명이나 삶이라 할지라도

자기결정의 시대정신에 따라 소위 ‘자율’ 혹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 또한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매우 중대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의 역사적 개관과 더불어 인간의 생명윤리와 관련된 주제에서 자기결정의 시대정신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중심으로 조명함으로써 올바른 인간관과 생명관 정립을 위한 고민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오늘날 세속적인 생명윤리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이든 타인의 것이든 인간의 삶이나 생명에 관한 결정의 주체를 누구로 인정하는가의 기본 세계관의 문제라 할 것이다. 이는 인간존재나 생명의 의미 및 가치를 바라보는 출발점이자 목표점 등 본질적으로는 세계관의 차이요, 세계관들 간의 영적인 싸움이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역사적인 오랜 논쟁은 이미 성경 속(엡 6: 10-12, 사 53: 6, 시 53: 1-3, 사 7:6 등)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인간중심적인 세계관이 만연한 가운데 난치성 질병이나 극심한 신체적 혹은 환경적 고통을 동반하는 삶을 소위 ‘의미 없는’ 인생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자의적이고 자율적인 죽음의 선택이나 생명의 중단 결정은 일종의 해방구이자 개인의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은 특히 창조-타락-구속이라는 기본 체계를 바탕으로 삼위 하나님은 만물의 본질이시자 우주의 주관자시라는 믿음 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 모든 생명은 각자가 유일무이한 존귀한 존재이므로 어떤 조건과 형편에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나 상황 속에도 인간의 생명을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인위적으로 해하거나 중단시키는 것은 비도덕적인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므로 엄금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양승훈, 1999: 36, 48; 이종원, 2009: 177-178).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안락사에 대한 국제적인 입장이 점차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나라들이 늘어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네덜란드나 벨기에에서는 2002년부터 환자의 상태나 통증, 자기결정, 두 명의 의료인 동의 등의 절차와 기준을 통하여 생명연장 장치에 의한 인위적인 수단으로 생명을 연장하지 않을 선택권을 부여하여 안락사를 일부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은 아직 없지만, 1993년 중증환자에게 영양공급 장치의 제거 허용판결이 내린 적도 있다. 미국에서는 1997년 10월 14일 미국연방대법원이 대법원이 의사조력자살 허용 법안을 합헌으로 판결했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1942년부터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해 환자를 사망하게 하는 형태의 안락사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지만, 조력자살은 허용한다. 말기 환자가 원할 경우에 자격을 갖춘 의사와 간호사의 약물처방으로 자살을 돕고 있다. 이에 독일, 영국, 프랑스 등 각국에서 이른바 ‘평화로운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 스위스로 향하는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최근 스위스에서는 무기수조차 안락사를 요청하면서 안락사의 대상 범위를 두고도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https://www.christiantoday.co.kr>; <https://nownews.seoul.co.kr>; <https://www.segye.com>; <https://nownews.seoul.co.kr>).

더군다나 안락사 논란에는 기독교계에서조차도 전통적인 반대 입장이 이어짐과 동시에 최근에는 안락사를 일부 허용하자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들이 지속성 식물인간, 치매, 정신질환 및 중증장애 등에까지 연명의료중단 대상자의 확대로 이어져 행여나 인과적 메커니즘의 작용 원리에 속하는 이른바 ‘미끄러운 경사길 이론’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음도 지적되고 있다(박상은, 2018; 73). 역사적으로 중세 기독교 사상의 도입 이후 자살이나 안락사 등 생명의 경시 풍조에 대하여 대체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가 근대 이후에는 서서히 기독교계 사상가들로부터 불치병이나 혹은 이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경감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앞당기는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이해와 지지적인 주장들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던 것이었다. 20세기 중반 미국의 신학자인 플레처(Fletcher)는 전통적인 계율주의를 거부하는 새로운 윤리 방법으로 ‘상황윤리(Situation Ethics)’를 주장하였다. 이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윤리적 원리와 판단기준으로 ‘사랑’이라는 애매한 용어를 통하여 도덕적 규범을 어긴 일을 정당화한 것이다. 한 예로, 고통 속에 있는 유아에 대해서 가족이 선택적 죽음을 결정하도록 돕는 것이 훨씬 더 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동시에 중환자의 고통스런 생명을 인위적으로 이어가는 이른바 ‘무의미’한 생물학적인 삶보다는 이를 인위적으로 중단하거나 단축시키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에게 사랑을 실천한다고 보았다(강경미, 2009: 80-89; <http://www.kehcnnews.co.kr>).

둘째,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간의 죽음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 할 것이다. 죽음이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하는 과정이다. 모든 인간은 생애주기 가운데 하나이며, 누구나 한번은 기본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인식의 가장 큰 차이는 죽음의 근본 원인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한 일이다. 성경은 히브리서 9: 27에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등 여러 곳에서 인간 죽음의 필연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창세기 3: 17-19에서 죽음이 예고되었던 것이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전혀 질 다른 세계가 존재하며 창조주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Selderhuis, 2009: 244-249). 그러나 대부분의 세속주의자들은 죽음을 한낱 자연현상이거나 생물학적인 과정으로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소멸되거나 혹은 윤회적인 죽음을 주장하면서 성경적인 내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셋째, 극심한 고통이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중환자에 대하여 자의든 타의든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것 보다는 최대한의 통증조절과 심리·정서적 스트레스를 경감하도록 돌봄을 제공하는 호스피스 제도의 사회적 확대 및 활성화가 대안 중 하나일 수 있다. 이는 중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거나 또는 단축하지도 않는 가운데 죽음을 이해하고 평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연사하도록 돕는 것을 말

한다(이종원, 2009: 181- 182). 여기에는 특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영적인 소망 가운데 죽음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나 육체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지키며 가능한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하도록 돕는 통증완화 치료를 강조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존엄하게 만드신 후에 생명권을 부여하셨지만, 자기 스스로든 타인이든 간에 자살이나 안락사 등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할 수 있는 권리인 생명결정권을 허용하신 것은 결코 아니다. 또 존엄한 죽음이 마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이는 존엄한 죽음이라 할 수도 없다(박상은, 2018; 73-75). 우리의 전인적인 삶의 여정에서 모든 선택과 결정의 판단 기준은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중심의 방향정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요리 문답(The Shorter Catechism)의 제1문을 보더라도 '사람의 제 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에 대하여 '사람의 제 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답한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귀한 인간은 하나님이 우주의 절대주권자이시므로 인생의 최고 목적이야말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일이라 할 것이다(정기화, 1988: 11). 그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 8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로다"와 고린도전서 10: 31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에서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만물을 지으시고, 죄악 속의 인류를 구원하시며, 장차 심판주로 오실 주재이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매사를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결국 죽음이란 그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 삶의 한 과정이므로, 이를 대비하는 교육이나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사회가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치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유일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와 선교이다. 왜냐면, 이러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 이유를 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를 돕는 일이 예수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며, 교회와 성도의 사명에 해당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 문헌

- 강경미(2009). 안락사의 생명윤리학적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 **복음과 상담**, 12, 69-92.
- [Kang, K.M.(2009). Remarks on Euthanasia in terms of Christian Bio-ethics, *Evangelism and counseling*, 12, 69-92.]
- 금교영(2000). **생명·의료 윤리**. 부산: 세종출판사.
- [Kuem, G.Y.(2000). *Life·Medical Ethics*. Busan: Sejongchulpansa]
- 김기흥(2018). 히틀러와 장애인. 서울: 집문당.
- [Kim, K.H.(2018). Hitler and Disabled Person. Seoul: Jipmundang]
- 김선일 역(2001). **복음주의와 기독교적 지성**. Mc Grath, A.(1996). A Passion for Truth. 서울: 한국기독교학
생출판부.
- [Kim, S.I.(2001). *Evangelical and Christian Intelligence*. Mc Grath, A.(1996). A Passion for Truth.
Seoul: IVP]
- 김정환(1995). **인간화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Kim, J.H.(1995). *How to do humanization education?* Seoul: Naeileul yeo neun chaeg.]
- 문성학(2000). **현대인의 삶과 윤리**. 개정판. 서울: 형설출판사.
- [Moon, S.H.(2000). *Modern Life and Ethics. Revision*. Seoul: Hyeongseol- chulpansa]
- 박상은(2018). 생명의 마지막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연명의료결정법을 중심으로. **통합연구**, 20(2), 57-80.
- [Park, S. E.(2018). Ethical Issues Relate to End-of-Life: With Focus on Life-Sustaining-Treatment
Decision-Making Act. *Integrated Research*, 20(2), 57-80]
- 박영호 역(1985).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John R. W. Stott(1984).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Park, Y. H.(1985). *Modern Social Issues and Christian Answers*. John R. W. Stott(1984).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Seoul: Gidogyomunseoseongyohoe.]
- 신성수 역(1986).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Howard Marshall, I.(1978). Pocket Guide to Christian Beliefs.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 [Shin, S.S(1986). *What do we believe?*, Howard Marshall, I.(1978). Pocket Guide to Christian Beliefs.
Seoul: IVP]
- 양승훈(1999). **기독교적 세계관**. 개정판. 서울: 도서출판 CUP.
- [Yang, S.H.(1999). *Christian Worldview. Revision*. Seoul: CUP.]
- 이경직(2016).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자유의지론. **생명과 말씀**, 제15권. 35-68.

- [Lee, K.J.(2016). A Study on the Concept of Free Will in John Calvin's Institutes. *Life and Word*, 15, 35-68]
- 이종원(2009). 기독교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본 존엄사. *기독교사회윤리*, 17, 161-188.
- [Lee, J. W.(2009). Death with Dignity from a Christian Bio-ethical Perspective. *Christian Social Ethics*, 17, 161-188]
- 장호광 율김(2009). 중심에 계신 하나님. 중심에 계신 하나님. Selderhuis, H. J.(2004). Gott in der Mitte. Calvins Theologie der Psalmen.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Jang, H. K.(2009). *God in the middle. Calvin's Theology of the Psalms*.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정기화(1988). *소요리 문답*. 서울: 규장문화사.
- [Jeong, K.H.(2016). *The Shorter Catechism*. Seoul: Gyujangmunhwasa]
- 정옥배 율김(1994). *지성의 제자도*. Sire, J. W.(1990). Discipleship of the mind.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 [Jeong, O.B.(1994). *Intellectual discipleship*. Sire, J. W.(1990). Discipleship of the mind. Seoul: IVP.]
- 정화성(2017). 「연명의료결정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고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11(2). 191-214.
- [Jeong, H. S.(2017). A Review on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and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Culture and Media Entertainment Act*, 11(2). 191-21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세종특별자치시: 고려 씨엔피.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2018). *A plan to secure dignity in old age by improving the quality of death*.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Korea CNP]
- 허일태(1994). *안락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Huh, I.T.(1994). *Studies on Euthanasia*. Korea Criminal Policy Institute]
- 황경식 율김(2000). *토론수업을 위한 응용윤리학*. Brody, B.(1983). Ethics and it's applications. 서울: 철학과 현실사.
- [Hwang, K.S.(2000). Applied Ethics for Discussion Class. Brody, B.(1983). *Ethics and it's applications*. Seoul: Cheolhaggwa Hyeonsilsa]
- 황경식·김성동 율김(1997). *실천윤리학*. Singer, P.(1993). Practical Ethics. 서울: 철학과 현실사.
- [Hwang, K.S. & Kim, S.D.(1997). Practical Ethics. Singer, P.(1993). Practical Ethics. Seoul: Cheolhaggwa Hyeonsilsa]
- Aberger, M.(2011). Was ist Autonomie und wie kann man sie erlangen? München: GRIN Verlag.
- [Aberger, M.(2011). What is autonomy and how can you get it? Muenchen: GRIN publishing]

Delitz, H.(2013). *Émile Durkheim zur Einführung*. Hamburg: Junius.

[Delitz, H.(2013). *Émile Durkheim as an introduction*. Hamburg: Junius.]

Franz, A.(2002). *Selbstbestimmt Leben mit persoenlicher Assistenz*. Eine alternative Lebensform behinderter Frauen. Neu-Ulm: AG SPAK.

[Franz, A.(2002). *Independent Living with Personal Assistance*. An Alter-native Way of Life for Disabled Women. Neu-Ulm: AG SPAK.]

Jost, A.(1895). *Das Recht auf den Tod*. Nikosia. TP Verone Publishing House Ltd.

[Jost, A.(1895). *The Right to Death*. Nicosia. TP Verone Publishing House Ltd.]

Miles-Paul, O.(1992). *Wir sind nicht mehr aufzuhalten-Behinderte auf dem Weg zur Selbstbestimmung*; Beratung von Behinderten durch Behinderte- Peer Support: Vergleich zwischen den USA und der BRD. Muenchen: AG- SPAK.

[Miles-Paul, O.(1992). *We are Unstoppable Disabled People on the Way to Self-Determination*; Advice to Disabled People through Disabled Peer Support: Comparison between the USA and the FRG. Munich: AG-SPAK.]

Mürner, C./Sierk, U.(2009). *Krüppelzeitung*. Brisanz der Behindertenbewegung. Neu-Ulm: AG-SPAK-Bücher.

[Mürner, C./Sierk, U.(2009). *Cripple Newspaper*. The Explosiveness of the Disabled Movement. Neu-Ulm: AG-SPAK books.]

Nowak, K.(2001). *Schleiermacher: Leben, Werk und Wirkung*.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Nowak, K.(2001). *Schleiermacher: Life, Work and Effect*.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Schmuhl, H-W.(1992). *Rassenhygiene, Nationalsozialismus, Euthanasie*. Von der Verhuetung zur Vernichtung 'lebensunwerten Lebens' 1890-1945. 2. Aufl.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Schmuhl, H-W.(1992). *Racial Hygiene, National Socialism, Euthanasia*. From Prevention to the Destruction of 'Life Unworthy of Life' 1890-1945. 2nd Edition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국민일보. 2021.02.09. 연명의료결정 시행 3년... '존엄사' 114% 증가, 기관 방문 작성하는 의향서는 크게 줄어
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7263&code=14130000&cp=du>(검색일 2021.03.10.)

[Kookmin Ilbo. 2021.02.09. Three years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enforcement... 'Dignity history' increased by 114%, and letters of intent to visit institutions greatly decreased.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7263&code=14130000&cp=du>(2021.03.10.)]

- 국민일보. 2020.11.27. “사유리 비혼 출산, 자유의지보다 생명윤리가 우선”<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0379&code=23111111 &cp=du>(검색일 2021.03.15.)
- [Kookmin Ilbo. 2020.11.27. “Sayuri Unmarried Childbirth, Life Ethics Priority to Free Will”<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0379&code=23111111 &cp=du>(2021.03.15.)]
- 나우뉴스 2020.01.13. 무기수에게도 안락사 인정?...스위스서 ‘죽을 권리’ 놓고 논란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13601011&wlog_tag3=daum(검색일 2021.04.27.)
- [Now News 2020.01.13.Awesome also recognized euthanasia?... Controversy over the ‘right to die’ in Switzerland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13601011&wlog_tag3=daum(2021.04.27.)]
- 노컷뉴스. 2020.12.31. 인권위 “낙태죄, 여성 자기결정권 침해...非범죄화 바람직”<https://www.nocutnews.co.kr/news/5473552>(검색일 2021.03.15.)
- [No Cut News. 31 December 2020 Human Rights Commission “Abortion, violation of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preferably non-criminal” <https://www.nocutnews.co.kr/news/5473552>(2021.03.15.)]
- 뉴스포스트. 2021.02.10.“연명치료 안받겠다” 존엄한 죽음 준비하는 어르신 늘어<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2222>(검색일 2021.03.10.)
- [News post. 2021.02.10. “I will not receive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number of seniors preparing for death with dignity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2222>(2021.03.10.)]
- 뉴스핌. 2021.03.15. 국내 10~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15000472>(검색일 2021.03.15.)
- [NewsPim. 2021.03.15. ‘Suicide’, the number one cause of death in Korea’s 10s and 30s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15000472>(2021.03.15.)]
- 세계일보 2013.12.02.스위스, 조력자살 1942년 첫 허용 <https://www.segye.com/newsView/20131201002218?OutUrl=daum>(검색일 2021.04.27.)
- [Segye Ilbo 2013.12.02.Switzerland, assisted suicide first allowed in 1942 <https://www.segye.com/newsView/20131201002218?OutUrl=daum>(2021.04.27.)]
- 연합뉴스. 2021.02.26.”죽음 아닌 자유 위한 싸움”...페루 40대 환자에 안락사 허용.<https://www.yna.co.kr/view/AKR20210226010100087?input=1179m>(검색일 2021.03.09.)
- [Yunhap news. 2021.02.26.”Fight for freedom, not death”... Euthanasia allowed for patients in their 40s in Peru.<https://www.yna.co.kr/view/AKR20210226010100087?input=1179m>(2021.03.09.)]
- 연합뉴스. 2021.03.10.’소생 희망’ 아내 호흡기 켜 남편 “자식에 부담 주기 싫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310144400062?input=1179m>(검색일 2021.03.10.)

- [Yunhap news. 2021.03.10.'Resuscitation lean' wife removed respiratory system Her husband "I didn't want to burden her child.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0144400062?input=1179m\(2021.03.10\)](https://www.yna.co.kr/view/AKR20210310144400062?input=1179m(2021.03.10))]
- 중앙일보 2007.05.21. [도올인터뷰] '실천윤리학'의 거장 피터 싱어 교수를 만나다[https://news.joins.com/article/2733541\(검색일 2021.04.16\)](https://news.joins.com/article/2733541(검색일 2021.04.16))
- [JoongAng Ilbo 2007.05.21. [Doall Interview] Meet Professor Peter Singer, the master of 'Practical Ethics' [https://news.joins.com/article/2733541\(2021. 04.16\)](https://news.joins.com/article/2733541(2021. 04.16))]
- 크리스천투데이 2020.04.24.네덜란드 대법원, 치매 환자 안락사 조건부 승인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1038\(검색일 2021.04.27\)](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1038(검색일 2021.04.27))
- [Christian Today 2020.04.24.The Dutch Supreme Court approves conditional euthanasia of dementia patients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1 038\(2021.04.27\)](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1 038(2021.04.27))]
- 한국성결신문 2008.04.19.<신앙과 윤리>상황윤리와 그 문제점. [http://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검색일 2021.04.27\)](http://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검색일 2021.04.27))
- [Korea Holiness Newspaper 2008.04.19.<Faith and Ethics> Situational Ethics and Its Problems. [http://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2021.04.27\)](http://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2021.04.27))]
- KBS 2021.03.15. 자살 유가족 우울 위험 18배↑..'원스톱 지원' 절실 [https://news.v.daum.net/v/20210315064619242?f=o\(검색일 2021.03.15\)](https://news.v.daum.net/v/20210315064619242?f=o(검색일 2021.03.15))
- [KBS 2021.03.15. 18 times the risk of depression by suicide survivors↑.. 'One-stop support' desperately [https://news.v.daum.net/v/20210315064619242?f=o\(2021.03.15.\)](https://news.v.daum.net/v/20210315064619242?f=o(2021.03.15.))]
- KTV 2020. 11.27. 극단적 선택 '경고신호'..유족 62% 중증 우울장애[https://news.v.daum.net/v/20201127180042604?f=o\(검색일 2021.04.21.\)](https://news.v.daum.net/v/20201127180042604?f=o(검색일 2021.04.21.))
- [KTV2020.11.27. Extreme choice'warning signal'.. Bereaved 62% severe de-pressive disorder [https://news.v.daum.net/v/20201127180042604?f=o\(2021.04.21.\)](https://news.v.daum.net/v/20201127180042604?f=o(2021.04.21.))]
- BIZEPS. 2018.11.20.Adolf Ratzka: Kämpfer für Selbstbestimmung wird 75[https://www.bizeps.or.at/adolf-ratzka-kaempfer-fuer-selbstbestimmung- wird-75/\(검색일 2012.03.08.\)](https://www.bizeps.or.at/adolf-ratzka-kaempfer-fuer-selbstbestimmung- wird-75/(검색일 2012.03.08.)).
- [BIZEPS. 2018.11.20.Adolf Ratzka: Fighter for self-determination turns 75 [https://www.bizeps.or.at/adolf-ratzka-kaempfer-fuer-selbstbestetzung-wird-75/\(2012.03.08.\)](https://www.bizeps.or.at/adolf-ratzka-kaempfer-fuer-selbstbestetzung-wird-75/(2012.03.08.))]
- Kölner Stadt-Anzeiger. 2018.05.10. Sterbehilfe 104-jähriger Australier Goodall nach tödlicher Infusion gestorben[https://www.ksta.de/panorama/sterbehilfe- 104-jaehriger-australier-goodall-nach-toedlicher-infusion-gestorben-30151818 \(검색일 2021.02.26.\)](https://www.ksta.de/panorama/sterbehilfe- 104-jaehriger-australier-goodall-nach-toedlicher-infusion-gestorben-30151818 (검색일 2021.02.26.)).
- [Kölner Stadt-Anzeiger.2018.05.10. Euthanasia 104-year-old Australian Goodall died after a fatal infusion [https://www.ksta.de/panorama/sterbehilfe-104-jaehriger-australier-goodall-nach-toedlicher-infusion-dies-30151818\(02. 26.2021.\).](https://www.ksta.de/panorama/sterbehilfe-104-jaehriger-australier-goodall-nach-toedlicher-infusion-dies-30151818(02. 26.2021.).)]

- Spiegel. 2016.09.26. Euthanasie an Kindern. Warum Ernst Lossa, 14, sterben musste.<https://www.spiegel.de/geschichte/euthanasie-programm-der-nazis-der-tod-von-ernst-lossa-14-a-1113550.html>(검색일 2021.2.23.).
- [Spiegel. 2016.09.26. Euthanasia on children. Why Ernst Lossa, 14, had to die.<https://www.spiegel.de/geschichte/euthanasie-programm-der-nazis-der-tod-von-ernst-lossa-14-a-1113550.html>(2021.2.23.)]
- Welt. 2018.05.13 Panorama.104-Jähriger bereut, dass er so alt geworden ist<https://www.welt.de/vermischtes/article176015140/David-Goodall-104-Jaehriger-bereut-dass-er-so-alt-geworden-ist.html>(검색일 2012.02.26.)
- [Welt. 2018.05.13 Panorama. 104-year-old regrets that he has become so old<https://www.welt.de/vermischtes/article176015140/David-Goodall-104-Jaehriger-bereut-dass-er-so-alt-geworden-ist.html>(2012.02.26.)]
- Welt. 2015.05.25. So begründet Peter Singer Tötung behinderter Babys <https://www.welt.de/politik/deutschland/article141455268/So-begrueudet-Peter-Singer-Toetung-behinderter-Babys.html>(검색일 2021.04.16.)
- [Welt. 05.25.2015. This is how Peter Singer justifies the killing of disabled babies.<https://www.welt.de/politik/deutschland/article141455268/So-verduendet-Peter-Singer-Toetung-behinderter-Babys.html>(검색일 2021.04.16.)]

인간 생명의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조명*

A Christian Worldview Illumination of Self- Determination of Human Life

김기흥 (부산교육대학교)

논문초록

국제적인 장애인운동에서 출발한 자기결정의 시대정신이 최근에는 생명윤리적 주제에까지도 자기결정권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 생명윤리의 주제에 보편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자기결정의 시대정신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조명해봄으로서 올바른 인간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결국 인간의 생명윤리를 둘러싼 자기결정과 관련된 오랜 논쟁의 출발점은 세계관의 차이이다. 인간중심적인 세계관인 현대주의는 이른바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인위적인 죽음은 개인적 권리이며 해방구라 본다. 그 반면에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타락-구속이라는 기본구조 위에서 하나님이 우주의 본질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하며, 모든 생명은 존귀하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다. 특히 호스피스 제도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이나 육체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지키며 가능한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하도록 사회적으로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주제어: 기독교 세계관, 생명윤리, 안락사, 낙태, 자기결정